

상족암군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민간위탁동의안
(의안번호 제553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	: 1999. 7. 9	고성군수
나. 회부일자	: 1999. 7. 10	
다. 상정일자	: 1999. 7. 22	산업건설위원회 상정
라. 의결일자	: 1999. 7. 23	산업건설위원회 수정의결

2. 제안이유

- 0 상족암군립공원 내 임시주차장(주차면 161면)이 확보됨에 따라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17조(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)에 의거 주차료를 징수코자 하며
- 0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기회 확대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0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: 민간위탁 징수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상족암군립공원은 본군 관내 하일면 춘암리와 하이면 덕명·월흥리 일원 육지 1.334km², 해상 3.772km², 총 5.106km²로서 1983. 11. 10 고성군고시 제20호로 고시된 공원으로서
- 0 그간 고시만하여 97년까지 재전마을에서 해안지역 일부를 주차장으로 관리하던 곳을 97년부터 98년까지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군에서 덕명리 22번지 일원 8필지 4,924m²를 매입하고 임시주차장 주차면 161면을 확보하였으며
- 0 1998. 7. 31 제62회 임시회에서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하고 1999. 6. 24 제69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한바 있습니다.
- 0 본 동의안은 자연공원법 제26조 및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의 동의는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제출된 안의 공개입찰시 타지역인의 낙찰시는 제전마을과 분쟁을 예상하여 제전마을과 위탁계약코져 수탁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하이면민이 수탁하면 안되는가
- 답 : 현지 공원 정비공사와 연계 제전마을에 위탁계약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- 문 : 주차료 징수예상을 2,000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
- 답 : 본 군의 조례상 관광지 주차료 요금표의 차종별 평균치를 산정 추정한 것이라고 하였음.

6. 토 론

- 7월 22일 현장을 방문하여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을 한바 의견이 분분하고 수탁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제전마을에 위탁계약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므로
- 본 동의안의 첨부된 안 3면의 “ 주차료 징수방법 검토” 항목과 내용의 17행 전부를 삭제하여 수정심의

7. 심사결과

- 1999. 7.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